

제21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16. 3. 22.~3. 28.)

일 반 의 안

거 창 군

--- 목 차 ---

의안 번호	건명	페이지
2016-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
2016-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5

제216회 거창군의회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재무과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안 번호	2016-
----------	-------

제출일자 : 2016. 3.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① 일반재산 매각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농지로서 매수 신청인이 장기간 경작한 농지이며 저지대로 집중 강우 시 침수가 잦고 토질이 사질토로서 가뭄 시 누수가 심함.
-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성토를 하여 토질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으나 공유지는 형질 변경허가가 불가하고 허가가 되어도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보상을 받지도 못하는 실정으로 수차례 매수 신청을 한 토지로서 군에서는 보존하여 활용할 가치가 없는 토지로 판단됨.

2. 매각재산의 표시

(단위:㎡,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매각 시기	매각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계				4,614	57,675			
매각	토지	남상면 대산리 1034	답	4,614	57,675	2016	보존부적합	거창군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4. 위치도 및 전경사진 ⇨ “붙임 참조”

위치도 및 전경사진

■ 위치도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034번지 답 4,614㎡



■ 전경사진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안 번호	2016-
----------	-------

제출일자 : 2016. 3.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②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북부권역 (주상, 응양, 고제)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사업 변경(안)

1. 제안이유

- 본 사업은 거창군의회 2015년 제1차 정례회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건물 신축에 따라 총사업비의 30%이상이 변경되어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함.
- 주상면 도평리 462-3외 3필지에 북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농기계보관창고 1동, 운영관리실 1동)를 신축하여 원거리 농업인의 농기계임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및 이용편의 제공

2. 취득재산의 표시

- 당초 : 북부권역(주상, 응양, 고제) 농기계임대사업소 부지 매입 (단위:m², 천원)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계				3,208	38,493			
취득	토지	주상면 도평리461-3	답	463	5,556	2015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부지매입	취득 완료
		주상면 도평리462-1	답	869	10,428			
		주상면 도평리462-2	답	746	8,952			
		주상면 도평리462-3	답	1,130	13,560			

- 변경 : 북부권역(주상, 응양, 고제)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 변경사항 : 토지취득사항은 변경 없음, 건물신축, 사업비 변경

(단위:m², 천원, 동)

구분	재산종별	재 산 소 재 지	물 건	수량	건축 면적	사업비
계				2	825	920,000
취득	건물	주상면 도평리 462-3외3필지	농기계보관창고(1층)	1	660	920,000
			운영관리실(1층)	1	165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4. 지적도 및 위성사진 ⇨ “붙임 참조”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안
번호 2016-

제출일자 : 2016. 3.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③ 석강 제2농공단지 분양 매각

1. 제안이유

- 거창군에서 조성한 석강 제2농공단지를 입주희망 기업체에 분양하여 공유 재산(토지)을 처분코자 함.

< 석강 제2농공단지 조성현황 >

- 예 정 지 : 거창군 가조면 석강리 일원
- 사업규모 : 42,353.6㎡
- 준 공 : '14. 1월
-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2. 매각재산의 표시

- 석강 제2농공단지 [거창군→입주희망기업체]

(단위:㎡, 천원)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분양가)	처분 시기	처분 사유	처분재산 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적					
계		34,689.5	2,376,818				
공장	가조면 석강리 1420	6,303.9	431,924	2016년 이후	조성완료된 농공단지 매각	거창군	분양가 ㎡당/ 68,517 원
공장	가조면 석강리 1421	5,605.7	384,085				
공장	가조면 석강리 1422	5,275	361,427				
공장	가조면 석강리 1432	6,488.6	444,579				
공장	가조면 석강리 1431	5,529	378,830				
공장	가조면 석강리 1430	5,487.3	375,9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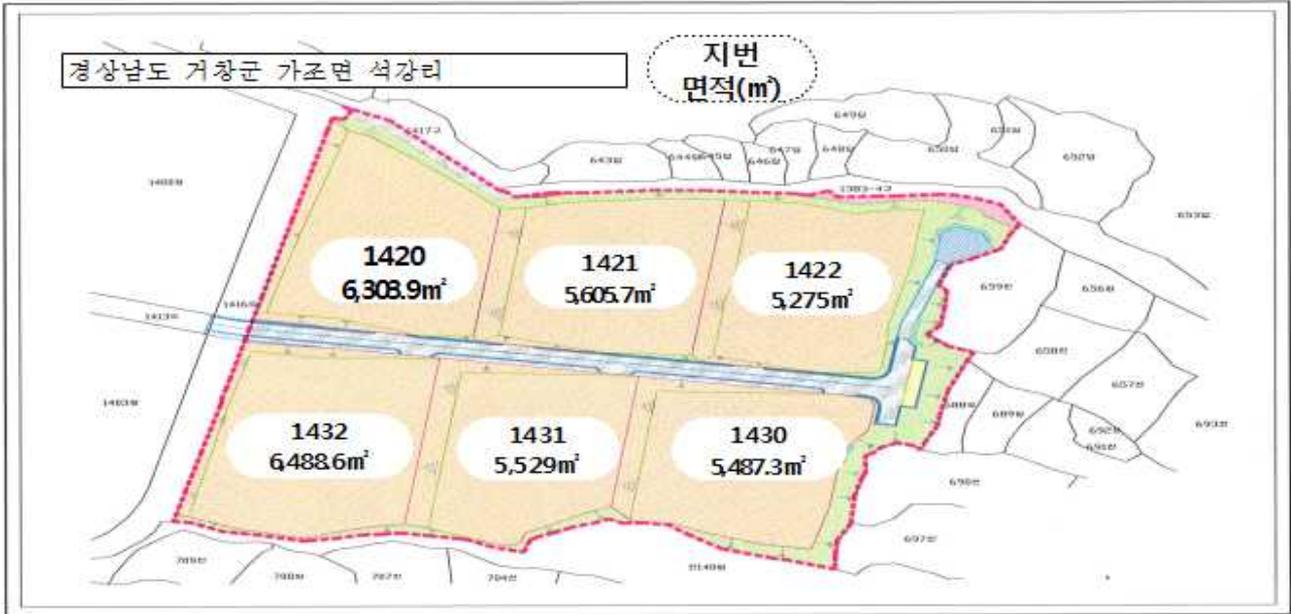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제39조(교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44조(교환),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4. 구획평면도 및 위성사진 ⇨ “붙임 참조”

구획평면도 및 위성사진

■ 구획평면도



석강제 2농공단지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도

범례	구분	면적		비율 (%)
		㎡	평	
	구역계	42,353.6	12,834.4	100.0
	산업시설용지	34,689.5	10,512.0	81.9
	수계	7,664.1	2,322.5	18.1
기타 시설 용지	녹지	4,008.7	1,214.8	0.5
	도로	2,866.6	868.7	6.8
	배수지	349.5	106.9	0.8
	주차장	129.9	39.4	0.3
	기타	309.4	93.8	0.7



■ 위성사진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사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44조(교환) ① 법 제39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교환할 때에는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재산과 교환하여야 한다.

② 국유재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처분 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는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이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16회 거창군의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 건 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의안
번호 2016~

제출일자 : 2016. 3.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6기 지역의료계획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과 시행결과를 작성하기 위함

2.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3. 보고사항

가. 지역사회 현황 분석

나.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

1)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가) 건강생활 실천 확산

나) 예방중심 건강관리

다) 보건환경 안전관리

라)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향상

2)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가)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

나) 자원협력 역량 강화

3)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가) 시설장비 확충 보강

나) 인력확충 질적 강화

4. 향후 추진계획

- 2016. 03. : 홈페이지 공고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 “따로 붙임”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해당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수립한 후 해당 시·군·구의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하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2. 지역현황과 전망
 3.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4.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추진계획과 추진현황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 자원 확충 및 정비 계획
 6.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
 7.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사이의 연계성 확보 계획
 8. 의료기관의 병상(病床)의 수요·공급
 9.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시설의 수요·공급
 10.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지원
 11.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12.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간의 협력·연계
 13. 그 밖에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내용
 2.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